2023-03-23

SK 증권
Analyst 이동건 · 02-3773-9909 · dglee@sks.co.kr

Issue Comment

✓ 22 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'계속 심사' 결정 보도

✓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질병관리청 권한 강화가 핵심

✓ 지연일 뿐 균주 기원 명확한 기업들에게 부정적이지 않아

감염병예방법 개정안, 국회 법안소위에서 '계속 심사' 결정

- 22 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2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감염병예방법) 일부개정법률안'에 대해 '계속 심사'를 결정
- 해당 개정안은 1) 보툴리눔 톡신을 포함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(이하 병원체)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 일 이내 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, 2)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, 3)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, 4) 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발의
- 구체적으로는 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병원체의 보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병원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, 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병원체가 보유허가를 받은 병원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며 유전자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
- 만약 해당 병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,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요구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함
- 특히 이 과정에서 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,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병원체 보유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
-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영업비밀, 재산적 가치인 병원체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면 기업과 연구활동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
- 반면 언론보도에서 질병청은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개정안은 국내 산업과 연구활동을 고려해 업체 및 취급자 규제를 최소화하고 생물테러 이용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. 또한 해당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나 기업활동 저해와는 무관하다고 피력
- 한편 해당 소식에 메디톡스와 제테마 주가는 시간외거래서 각각 6.8%, 6.1% 하락. 반면 대웅제약, 휴젤, 휴온스는 각각 2.3%, 2.1%, 0.8% 상승
-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'계속 심사' 결정에 따라 지연됐다는 점은 분명하나,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원이 불명확했던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뿐 기원이 명확한 기업들에게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필요 없어

▪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▪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▪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▪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